

수원지방법원 2020. 10. 29 선고 2019나9239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유한책임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영, 권민혁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

변론 종결 2020. 9. 17.

판결 선고 2020. 10. 29.

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11. 26. 선고 2018가단18688 판결

주 문

1.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중 '5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. 10.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비율로 계산한 돈'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, 이 법원에 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,290만 원 및 그 중 3,102만 원에 대하여는 2018. 11. 8.부터, 1,188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. 10. 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송달 다음날부터 각 값는 날까지 각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으로서 당초 3,102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가 4,29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,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. 한편, 이 사건 2020. 10. 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"2018. 11. 7."은 "2018. 11. 8."의 오키로 보인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2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5, 9, 12호증, 을 1 내지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16. 7. 27., G공사가 발주한 E공사(이하 '이 사건 건설공사'라 한다)를도급받은 D 주식회사(이하 'D'이라 한다) 및 주식회사 H(이하 'H'이라 한다)로부터 기계설비공사(이하 '이 사건 기계설비공사'라 한다)를 하도급받았고, F 주식회사(이하 'F'라 한다)는 그 이전인 2016. 4.경 D 및 H로부터 소방설비공사(이하 '이 사건 소방설비공사'라 한다)를 하도급받았다.

나. 피고는 'T'이라는 상호로 건축시공도면 작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D에 위 아파트 및

도시형생활주택 15개동의 시공상세도면 작성과 관련하여 1개동 당 600만 원씩 9,000만 원(부가가치세 별도,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)을 노무비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D의 허락 하에 2016. 4.경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여하였다.

다. 피고는, F 및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F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되, 그 대금은 1개동 당 600만 원씩 15개동 합계 9,000만 원으로 정하고, 매월 말 마감해서 다음달 10일에 매월 1,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며, 위 대금 9,000만 원은 F와 원고 사이에 4 : 6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다. 라.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였으나, 2016. 11.경 토요일 작업 여부를 두고 발생한 원고와의 의견충돌 끝에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후 설계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바, 그때까지 F로부터 는 2016. 4.분 ~ 2016. 7.분 대금 합계 4,800만 원(= 1,200만 원 × 4개월)을, 원고로부터는 2016. 8.분 ~ 2016. 11.분 대금 합계 3,900만 원[= 1,200만 원 × 3개월(2016. 8.분 ~ 2016. 10.분) + 300만 원(2016. 11.분), 부가가치세 포함 시 4,290만 원]을 각 지급받았다.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15개동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3개동에 해당하는 도면 84장만 작성하였는데, 그마저도 그대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고, 2016. 11. 말경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, 이를 이유로 원 ·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금 4,290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의 반환을 구하고,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로부터 약정된 설계용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서 동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.

나.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

1)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경우에,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

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(민법 제547조 제1항),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,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통틀어 이와 관련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대금 9,000만 원에 의뢰하였고, 이후 원고가 그 계약관계를 인수하였다는 것인 점(원고의 2020. 10. 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), ② 원고는 종전까지도 F,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5개동에 대한 설계용역을 대금 9,000만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, 위 계약이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로 구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주장한 바없는 점(원고의 2020. 3. 3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), ③ 피고의 견적서상으로도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15개동에 대한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9,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, ④ F와 원고가 설계용역대금 9,000만 원을 4 : 6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한 것일 뿐, 이를 두고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로 구분하여 별개의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F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통틀어 이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대금 9,000만 원에 의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F의 위임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)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구분하여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원 · 피고 사이에 매월 말 작업량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,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약정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피고에게 매월 1,200만 원씩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, ② 원고는 2016. 12.26.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3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피고와 사이에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, 실제로 원고가 2018. 9. 20., 피고와의 설계용역계약이 2016. 11.경 해지(타절)되었음을 전제로 기지급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대금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갑 2 내지 11,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약정한

설계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다.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

1) 용역대금 528만 원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

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라 할 것이고(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7695 판결 등 참조), 본안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는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이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는 못한다(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)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원고가 부당이득금으로 제1심에서 '3,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2.

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

계산한 돈'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항소한 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2020. 3.

3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'3,1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9. 21.부터

2018. 11. 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'의 지급을

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고, 다시 이 사건 2020. 10. 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

통하여 '4,290만 원 및 그 중 3,102만 원에 대하여는 2018. 11. 8.부터, 1,188만 원에 대하여는 이

사건 2020. 10. 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각 연

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'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

법원에 현저하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 청구금액 3,630만 원을 3,102만 원으로

감축함으로써 528만 원 부분을 취하하였다 할 것인데, 다시 청구금액을 4,290만 원으로 확장하면서

'1,1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. 10. 6.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

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'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'528만

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2020. 10. 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

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'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(이하 '이 사건 추가부분'이라

한다)은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,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정한 재소금지에 위반되어부적법하다.

2) 나머지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

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바(대법원 2018. 1.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), 위 2.나.2)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2 내지 11,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중 이 사건 추가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, 나머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각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한다.

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(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가 감축됨에 따라 실효된 부분은 제외)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중 이 사건 추가부분은 각하하며, 나머지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상회복회복청구는 각 기각한 다

재판장 판사 하성원, 판사 송승용, 판사 정덕수